##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 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꾸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u>
<u>내용을 검토</u>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09010005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09.01.2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3.07.17. www.2hoon.co.kr byun0306@hanmail.ne

이훈헤어칼라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이연에프비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입비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 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11-1, 301호

(신길동, 두산빌라)

[전 화: 02-702-2838]

[팩 스: ]

[담당부서: 경영관리팀 ☎ 02-702-2838]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8)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이훈헤어	ヲトコし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1길 11-1, 301호					
   주식회사	이 문에의	<b>쉳</b> 니	(신길동, 두산빌라)					
1	법인 설립등	키일 <sup>①</sup>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	<sup>년</sup> 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연에프비	2005.11	28	2005.11.28	변경수	02-70	)2-2838		
	법인등록번호 110111-		-3350040	사업자등록번	호	119-8	81-85127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sup>①</sup>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1길 11-1, 301호					
사용인	 변경수	   이훈헤어칼라	(	신길동, 두산빌라	.)			
(임원)		, , , , , , , ,	대표자 <sup>②</sup>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변경수	02-702-283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영등	포구 신길로 41길	11-1, 301호			
사용인	   정연화	   이훈헤어칼라	(신길동, 두산빌라)					
(임원)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변경수	02-702-2838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이훈헤어칼라]이라 합니다) 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sup>①</sup>	이훈헤어칼라	설립자(이종출)의 예명
상 호 <sup>②</sup>	이훈헤어칼라 〇〇점	
상표(서비스표) <sup>③</sup>	이훈	등록번호 4101161600000
광 고 <sup>④</sup>	F 이한테어칼라	
그 밖의 영업표지		

[(주)이연에프비는 이훈헤어칼라 홍보를 하고 사진 등의 자료도 첨부합니다.]\*



## 고민하지 마세요~

- 이훈헤어칼라 고객 공식
- 1. 고객은 똑똑하다 = 서비스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 2. 고객은 낭비하지 않는다 = 실속 가격이 정답이다
- 3. 과도한 인테리어 투자는 낭비다 = 고객이 곧 인테리어다

고객은 가족입니다 – 이훈헤어칼라

■ 이훈헤어칼라 가맹점 공식

1. 가맹점도 가족이다 = 가맹점 오픈비용 최소화

2. 가맹점도 가족이다 = <mark>경영/교육시스템 완벽 제공</mark>

3. 가맹점도 가족이다 = 성공 이외에 갈 길은 없다!

#### 가맹점은 가족입니다 - 이훈헤어칼라

쉽게 끝나지 않을 불황 -이훈헤어칼라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합리주의 프랜차이즈 - 이훈헤어칼라

불황 극복 기회의 전화 02-702-2838 (가맹문의) We will become your trustworthy partner!

## 5. 최근 3개 사업연도<sup>①</sup>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sup>②</sup>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785,009	234,092	550,916	473,687	-6,001	-5,135
2022년	746,551	195,662	550,888	389,744	-10,303	-27
2023년	713,410	199,489	513,921	335,395	-40,747	-36,967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sup>©</sup>은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 [ 2021년, 2022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2022년, 2023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sup>①</sup> 명단 및 사업경력<sup>②</sup>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b>774</b> H (3)	A) =	~] a] ()		사업경력		)1 ¬ 0 П	
관련여부 <sup>③</sup>	이름	현 직위	기간 <sup>④</sup>	직위	담당 업무	상근유무	
			2005.12.01 -	이훈홀딩스(주) 감사			
			2008.03.25	1世 3 - (1 ) 1 1 7			
	변경수	   대표이사	2008.03.26 -	  (주)이연에프비 이사	경영관리	상근	
	건경기	41 T 4/4	2013.03.07	[(기)의 단웨드리 의사	70 0114	0 -	
가맹사업			2013.03.08 - 현재 (주)이연에프비 국내가면		국내가맹		
관련				대표이사	사업총괄		
임원			2016.08.23 - 현재	이훈헤어칼라강남점			
				대표			
	정연화	감사	2007.04.27 -	  (주)이연에프비 이사	경영관리	비상근 비상근	
			2014.03.17	[(기)의단에드리 의사	70 0인터	"I'o' L	
			2014.03.18 현재	(주)이연에프비 감사	경영감사		
가맹사업	양두승	사내이사	2016.06.24 - 현재	(주)이연에프비 이사		비상근	
비관련	-1.31.3		2012.22.21	(7) 111 11 - 1 1 1 1		-3.33	
임원	정선아	사내이사	2016.06.24 현재	(주)이연에프비 이사		비상근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수(명)	직원수(명) <sup>①</sup>
시심	상근	비상근	[ 적원구(형)
2023년 12월 31일	1	3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sup>①</sup>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sup>②</sup>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sup>3</sup> )
이훈 (상표권)	간판 및 매장	2004.4.8. 출원 2005.5.10. 등록 2009.5.28. 양수 ※정연화로부터 양수	출원공고번호 4120050007423 등록번호 4101161600000	(주)이연에프 비	2025.5.1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田. 가맹본부의 [이훈헤어칼라] 가맹사업 현황

- [이훈헤어칼라] 을 시작한 날: 1992년
   (법인 설립과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5년)
- 2. [이연에프비] 연혁

가맹본부		대표자의		
	영업표지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상호		이름		
(주)엘에이치	이훈헤어칼라	위주연	2005.11.28-2006.1.25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2-20
홀딩스	이군에의질다	ਸਵਾਦ	2003.11.20 2000.1.23	에벤에셀 303호
(주)엘에이치	시중의시키기	コスラ	0000105 0007410	서울 용산구 갈월동 69-3
홀딩스	이훈헤어칼라	이종출	2006.1.25 - 2007.4.16	우신빌딩 5층
이훈홀딩스	시호의시키기	이종출,	0007 416 0000 0 00	서울 용산구 갈월동 69-3
주식회사	이훈헤어칼라	정연화	2007.4.16 - 2008.3.26	우신빌딩 5층
이훈홀딩스	이훈헤어칼라	이종출,	2000 2 26 2000 12 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6
주식회사	이순에의실다	정연화	2008.3.26 -2008.12.16	세한빌딩 4층
이훈홀딩스	이훈헤어칼라	정연화	2000 12 16 2000 2 4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6
주식회사	이순에의실다	경선와	2008.12.16 - 2009.2.4	세한빌딩 4층
주식회사	이훈헤어칼라	시 케 그	2000 2 4 2000 10 22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6
이연에프비	이운에역설다	이재규	2009.2.4 - 2009.10.28	세한빌딩 4층
주식회사	이훈헤어칼라	이재규	2009.10.28-2011.10.16	서울마포구 동교동 197-25
이연에프비	이군에의실다	○  ^# 1	2009.10.28-2011.10.10	신한빌딩 5층
주식회사	이훈헤어칼라	이재규	2011.10.17-2013.02.19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7-11
이연에프비	이군에이실다	○  ^Ħ 1	2011.10.17-2015.02.19	아이케이빌딩 2층
주식회사	이훈헤어칼라	이재규	2013.02.20-2013.3.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65-30
이연에프비	이순에의실다	ा भाग	2013.02.20-2013.3.6	(상도1동, 1층)
주식회사	이호케이카기	버거스	2012 2 0 2014 2 0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65-30
이연에프비	이훈헤어칼라	변경수	2013.3.8 - 2014.3.9	(상도1동, 1층)
조사회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7길
주식회사	이훈헤어칼라	변경수	2014.3.10 - 2016.3.24	15-10 (가리봉동,
이연에프비				청운하이츠빌10차)
주식회사	1 중 제 1 기 기	1월 구리 소	0010.005 = 71.1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이연에프비	이훈헤어칼라	변경수	2016.3.25 - 현재	11-1, 301호(신길동, 두산빌라)

## 3. [이훈헤어칼라]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이호레이카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운헤어갈라	이미용	펌/염색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이훈헤어칼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7) 61		2021.12.31		<i>c</i> 2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58	58	-	54	54	-	54	54	-	
서울	40	40	_	38	38	_	38	38	_	
부산	1	1	-	1	1	_	1	1	_	
대구	1	1	-	1	1	_	1	1	_	
인천	2	2	_	2	2	-	3	3	_	
광주	-	-	_	_	-	-	_	_	_	
대전	-	-	_	_	-	-	_	-	_	
울산	=	-	=	=	-	=	=	-	-	
세종	_	-	_	_	-	_	_	-	_	
경기	12	12	_	10	10	_	9	9	_	
강원	1	1	-	1	1	_	1	1	_	
충북	-	-	-	_	-	-		-	_	
충남	1	1	-	1	1	-	1	1	_	
전북	-	_	1	ı	_	_	ı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	_	-	-	_	-	_	_	
경남	=	-	=	=	-	-	-	-	-	
제주	_	_	_		_	_		_	_	

#### 5. 최근 3년간 [이훈헤어칼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sup>①</sup>	계약 해지 <sup>②</sup>	명의 변경 <sup>③</sup>	연말
2021	54	11	0	7	8	58
2022	58	1	0	5	3	54
2023	54	2	0	2	4	54

[이훈헤어칼라]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④

# 6. [이훈헤어칼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이훈헤어칼라]외에는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 $^{\oplus}$ 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oplus}$

[이훈헤어칼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 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sup>③</sup>.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	3년 가맹	점사업자.	의 연간	평균 매-	출액	비고 <sup>⑤</sup>
지역 <sup>④</sup>	2023년	말	연간 평균	' 매출액	상	한	히	-한	
	가맹점	수	연간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매출액	3.3m <sup>2</sup> 당	0 1	3.3m <sup>2</sup> 당	기반	3.3m <sup>2</sup> 당	
전체 <sup>®</sup>	54		123,554	3,436	386,157	10,821	32,040	900	
서울	38		129,103	3,664	386,157	10,821	36,186	900	가좌점, 낙성대점, 독산역점, 명일점, 신대방점, 오류역점, 정릉점, 홍제점 총 8개매장 제외
부산	1		해당없음						영도점 제외
대구	1		해당없음						상인점 제외
인천	3		해당없음						인천본점 제외
광주	_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9		132,028	2,597	230,404	4,600	82,733	918	광명점, 목감점, 부천역점, 역곡역점, 평택고덕점 총5개 매장 제외
강원	1		해당없음						춘천점 제외
충북	_		해당없음						
충남	1		해당없음						
전북	_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경남	_		해당없음						
제주	_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개설시 POS(Point of Sales)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만, 도입초기 단계로 매출자료로 사용하기 부적절합니다.]

[특히 전체 지역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물품 공급액을 1년치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의 신규 가맹점과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 17곳을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54개가 아닌 실제 37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times$  추정비율 $^{\otimes}$ (15)]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 7%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이연에프비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이훈헤어칼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이훈헤어칼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54	약 4년11개월(1,793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sup>①</sup>의 일반 정보

당사는 [이훈헤어칼라]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이훈헤어칼라]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45]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sup>①</sup>	수단 <sup>②</sup>	기간 <sup>③</sup>	지출 비용	용(단위: 천원 미포함)	비고 <sup>④</sup>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ə) —			_	_	_	
광고	소계		_	-	-	
판촉			_	-	-	
합	계		_	_	_	

#### 11. 가입비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입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수신부 프랜차이즈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9외	02-554-23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입비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이연에프비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 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입비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비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입비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입비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입비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입비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시정조치 등 $^{\mathbb{Q}}$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이훈헤어칼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sup>①</sup>		금액 <sup>②</sup>	지급 기한	반환조건 <sup>③</sup>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000~10,000				
	19평 이하	3,000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해당 사유가 있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기이님	20~34평	5,000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해당 사유가 있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 -	35~49평	7,000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해당 사유가 있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50평 이상	10,000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해당 사유가 있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sup>①</sup>	금액 <sup>②</sup>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sup>③</sup>	비고
총계	3,000~10,000			
계약이행보증 금	3,000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가입비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19평 이하
계약이행보증 금	5,000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가입비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20~34평
계약이행보증 금	7,000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가입비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35~49평
계약이행보증 금	10,000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가입비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50평 이상

3) 예치가입비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입비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6,000~20,000		
가입비	3,000~10,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3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sup>①</sup>	지급대상 <sup>②</sup>	금액 <sup>®</sup>	면적3.3m <sup>2</sup>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2,000~84,000]				
간판 필수설비(정 착물)	협력업체	실비견적 추정금액 4,000	해당없음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추정금액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실비견적 추정금액 75,000 (약 3.3m <sup>2</sup> 당 1,500)	1,5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후	공사 전 계약취소	165m <sup>2</sup> 기준 75,000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이연에프비	3,000~5,000	해당없음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sup>①</sup>	선정 기준 <sup>②</sup>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702-2838)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sup>①</sup>	계약·채용 기준 <sup>②</sup>
가맹점사업자	미용자격증 소지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미용 자격증을 소유할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미용자격증 소지자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훈헤어칼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입비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입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3,000~10,000	총액의 30%	30%	40%
납부일		계약일+3일	계약일+1월	계약일+2월
비고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 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sup>①</sup>	지급대상 <sup>②</sup>	금액 <sup>③</sup>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④
상표사용료	(주)이연에프 비	[의자당 22]	다음 월 15일			
교육훈련비	(주)이연에프 비		교육실시 10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광고 분담금	(주)이연에프 비/가맹점	광고비의 최대 50%				협의 결정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협의 결정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sup>⑤</sup>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협력업체	교체·보수 에 따른 실비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비용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 33	다음 월 15일		
점포환경개 선비용	협력업체	교체·보수 에 따른 실비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협의 결정
지연이자	(주)이연에프 비	지급일이후 15일이내-5 % 30일까지-10 %	대금지급일 이후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입비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 특히 가맹점의 결산에 관한 사항은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별 도로 지급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 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이훈헤어칼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이연에프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이연에비]에 계약이행보증금 [3,000~10,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비[3,000~10,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이훈헤어칼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물품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이훈헤어칼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

<sup>①</sup>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 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sup>①</sup>의 대가 내역

- 1)당사는 [이훈헤어칼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 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이훈헤어칼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sup>①</sup>	제한내용 및 조건 <sup>2</sup>	위반시 책임 <sup>③</sup>	비고 <sup>④</sup>
커트			
펌			
셋팅펌		1회 위반: 구두 경고	
디지털펌	특별한 제한사항 없음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매직펌	(단, 이미용을 벗어난		
염색	시술 금지)	시정요구	
크리닉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붙임머리			
영양			
기장추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및 용역의 판매 제한은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sup>①</sup>	권장가격(단위: 원) <sup>②</sup>	가격 통보 방법	비고 <sup>③</sup>
파 마 셋팅/디지털 염 색 매니큐어 매 직 스페셜(매직, 셋팅) 커 트	20,000 30,000 20,000 30,000 30,000 50,000 12,000	· · 가격 변경시 인터넷, · 우편을 통해 공지	머리 길이에 따라 짧은머리, 중간머리, 긴머리로 나누어 10,000원 추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 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 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sup>①</sup>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2}$		
중 글인 법중 컴퓨 	가맹본부	계열회사	
펌/염색을 주로 하는 미용업	이훈헤어칼라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sup>①</sup>	설정방법 <sup>②</sup>
인구30만이상의 수도권에서 2점포이상 가능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기초단체 행정구역상 1점포 원칙 (ex.광역시-동, 광역시이하-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의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	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등 상 생 생 해 는 는 소로 에 동 위로 대 요	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하는 경우 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 경우 비자의 기호변화 등으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 되는 경우 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자동의 → 영업지역 변경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 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 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 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 하여 '이훈헤어칼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 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라목)

####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 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이훈헤어칼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sup>①</sup>	영업표지	취급품목 <sup>②</sup>	가맹점과의 구분 <sup>3</sup>
일반사업장	바나나 미용실 외	염색약 외	상호가 다름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증빙

(단위: %)

2020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2023 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온라인 판매 매출액	
<u>'</u>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sup>②</sup>
,비율	99.2	0.8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 품의 비중 증빙

(단위: %)

2023년	오프라인 전용상품 수	온라인 전용상품 수 <sup>②</sup>
상품수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이훈헤어칼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입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7조 1-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7조 1-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7조 1-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를 37조 1-4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기 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37조 1-5항
○ 다름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주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30조 1-1항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0조 1-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 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30조 1-3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 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30조 1-4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 치하는 경우	30조 1-5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 우	30조 1-6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 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조 1-7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 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0조 1-8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

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8조 2-1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8조 2-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 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8조 2-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	
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	
래한 경우	_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38조 2-4항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	38조 2-5항
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	
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	
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	
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	38조 2-6항
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30± 2 0 8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8조 2-7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007 0 0=1
역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처의 시정	38조 2-8항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	
○ 가명심사업사가 성당한 사뉴 없이 연속하여 7월 이성 영업을 궁란한 경   - 우	38조 2-9항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거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 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 액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 시점까지 기존의 계약서 내용이 유지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sup>①</sup>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sup>①</sup>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sup>②</sup>	양도 절차 <sup>®</sup>	비고 <sup>④</sup>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 권 이전 완료	문의: (02-702-2838)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입비을 당사와 협의하여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sup>①</sup>	가능 여부(조건) <sup>②</sup>	이전 범위 <sup>③</sup>	절차 <sup>④</sup>	기타 의무사항 <sup>⑤</sup>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계약체결 (5일 소요) → 가 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 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불가능	_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지역 영업권 내에서] 귀하가 [이훈헤어칼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sup>①</sup>	경업허가 절차 <sup>②</sup>	비고 <sup>③</sup>
○ 이미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모 발과 관련된 시술을 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02-702-2838)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이훈헤어칼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1:00 (11시간)	설, 추석 명절 제외	문의: 경영관리팀 (02-702-283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이연에프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이훈헤어칼라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sup>①</sup>	광고 성격 <sup>②</sup>	부담	, –	분담 절차 <sup>④</sup>	비고 <sup>⑤</sup>
		본사부담 <sup>③</sup>	가맹점부담		
	상품광고	50%	50%	광고 및 선전의 실시방법 공고→	대중매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50%	50%	시기, 소요비용 및 당해 가맹점 분담금 통보→ 광고 전체 행사 진행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영고 전세 영사 전영 	(전국 행사)
개별 행사	(2007	사에 따라 딜 '년의 경우 행 업자당 20~50	사별로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 ※ 가맹점부담비율은 상한선으로 광고 이전 협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sup>①</sup>	소요비용 <sup>②</sup>
합계		47일 내외	[24p~25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ul><li>정보공개서 제공</li><li>가맹계약서 제공</li><li>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li><li>가맹희망자 상담</li></ul>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입비 예치	- 신한은행에 가입비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sup>③</sup>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이 간 판 교 체 비용 이 간 판 교 체 비용 이 인 테 리 어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 반하지 않는 점 포 환 경 개 선 : 20%	○ 자의 시 명점 사 경 약서 일 약시 일 약시 일 약시 일 약시 일 약시 일 약시 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제 전환경개 이 점포환경개 선일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 부의 책임 없는 부의 책임 여당의 해도 로(계약의 해도 주이 영업 양경 무기간 액이 생인는 부가 만 이 비를 지하는 이 지급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판촉지원	본사 주체 판촉 행사 진행시 판 촉물품공급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테스터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테스터 공급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신제품출시시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 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경영 지도 후 [ 7 ]일 이내 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경영지원팀 (02-702-2838)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 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경영 지도 후 [ 7 ]일 이내 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입비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경영지원팀 (02-702-2838)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이훈헤어칼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이훈혜어칼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이훈헤어칼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가입가맹비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3일	협의 결정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1조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

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1조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sup>①</sup> 운영 현황

- 1. 바로전 사업연도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비 해당없음.
- 2. 바로전 사업연도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없음.
- 3. 바로전 사업연도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해당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702-283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a href="http://franchise.ftc.go.kr">http://franchise.ftc.go.kr</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